##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 발의연월일: 2024. 6. 5

발 의 자:허 영·서영교·박 정

윤종군・조 국・이학영

맹성규 · 소병훈 · 김현정

강선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・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,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- 2. 다음 각 목의 지구·특구·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
  - 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의2의 도시재생혁신지구
  - 나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연구개 발특구
  - 다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 2조제1호의 지역특구
  - 라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3. 시·도청(특별시청·광역시청·특별자치시청·도청 및 특별자치 도청을 말한다),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 등의 협력기관과의 접근성

- 4.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
- 5. 기업등 입주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정주환경
- 6. 인구감소지역, 접경지역 등의 분포를 고려한 지역 간의 형평성
- 7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 혁신도시를 조성·육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
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	제6조(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
지정)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	지정) ①
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	
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
	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
	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<u> &lt;신 설&gt;</u>	2. 다음 각 목의 지구·특구·
	단지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계
	<u>성</u>
	<u>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</u>
	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	제6호의2의 도시재생혁신
	<u> 지구</u>
	나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
	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
	의 연구개발특구
	다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
	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
	특례법」 제2조제1호의 지
	역특구
	라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

	한 법률」 제2조제8호의
	<u>산업단지</u>
	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하는 지역</u>
<u>&lt;신 설&gt;</u>	3. 시·도청(특별시청·광역시
	<u>청・</u> 특별자치시청・도청 및
	특별자치도청을 말한다), 학
	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
	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 등
	의 협력기관과의 접근성
<u>&lt;신 설&gt;</u>	4.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성장할
	<u>가능성</u>
<u>&lt;신 설&gt;</u>	5. 기업등 입주기관 및 이전공
	공기관의 정주환경
<u>&lt;신 설&gt;</u>	6. 인구감소지역, 접경지역 등
	의 분포를 고려한 지역 간의
	<u>형평성</u>
<u>&lt;신 설&gt;</u>	7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 혁
	<u>신도시를 조성·육성하기 위</u>
	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